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2판)

2020. 2. 26



충청방역대책본부·충청사고수습본부

목 차

| | |
|--|----|
| I. 개요 | 2 |
| 1. 목적 | 2 |
| 2. 기본방향 | 2 |
| II.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 3 |
| 1. 일반 원칙 | 3 |
| 2. 소독 전 준비사항 | 4 |
| 3. 소독 시 주의사항 | 5 |
| 4. 소독 후 주의사항 | 5 |
| III.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 | 6 |
| [붙임] | |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 중 VII. 환경관리 | 9 |
|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 16 |
|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17 |
| 4.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 | 20 |
|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 21 |
| 6.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 25 |
| 7.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 | 27 |
| 8.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환경부 승인제품) | 41 |
| 9. 자주 묻는 질문 | 55 |

※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전파 역학적 특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지침 내용은 변경 가능

[주요 개정사항]

| 구 분 | 내 용 |
|-----------|---|
| 기본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청소·소독 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제시 • 소독관련 법적 근거 자료 제시 |
| 일반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자의 소독 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내용 제시 •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안내 |
| 소독 전 준비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소독제 선택을 위한 제품 목록 정보 추가 제공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제시 |
| 소독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에 관한 정보 제시 • ‘환자에 노출된 지역’→‘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으로 오염지역을 구체화 • ‘환자의 거주 공간’에 대한 소독의 경우 방법 기술내용의 중복을 고려하여 내용 축소 |
| 붙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의 법적 근거 제시 •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제시 •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환경부 승인제품) 정보추가 •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한 추가 정보 제공 |

I 개요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소독 지침 제공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이하 '시설'), 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안내
 -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의료기관의 소독 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의원급 의료기관용)」 안내 지침 준수

2. 기본방향

- 집단·다중이용시설 내 감염병 환자 이용공간이나 환자 거주 공간에 대한 신속한 소독 업무 처리절차 안내
-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감염성 물질을 불활성화 시키는 소독 방법 제시
- 소독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이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가 이용한 다중시설 공간(구역) 및 환자 거주공간의 청소와 소독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 *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청소·소독 기준에 따라 시행
-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 역학적 특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지침 내용은 변경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7조 **[붙임 1]**

II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

1. 일반 원칙

- (소독 계획) 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는 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필요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계획 수립
- **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시 업체에서 수행

-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교육 및 감염예방교육을 받아야함
 - 개인보호구 착용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일회용 이중 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 * 단,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① 소독제나 물을 적신 일회용 페이퍼 타올 등으로 표면을 먼저 닦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 * 표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소독 효과 감소
- ② 깨끗한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히 닦아냄(소독제를 압축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음)
 -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는 진공청소기 등의 방법은 피할것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

☞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2. 소독 전 준비사항

- (준비물품)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 (개인 보호구)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장화 등 추가
 - 환경소독제 선택
 - 코로나바이러스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
 - 환경 또는 물체 표면에 대한 소독제로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필요
 - 인체에 직접 적용(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식품 또는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식품첨가물)은 사용 용도에 적합한 소독제 선택
 -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알코올(70%), 제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 ☞ [붙임 7]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
- ☞ [붙임 8]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환경부 승인제품)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유의사항

- ① 환경소독제 사용시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뿐 아니라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반드시 준수
- ② 우선 **환경부의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하고, 제품에 표기된 제조업체의 **지침, 주의사항** 등에 따라 준비(붙임 7 붙임 8)
- ③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며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
- ④ 환경부 승인 제품된 제품이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며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사용(1000ppm)하며 처리시간은 10분 이상 유지필요
- ⑤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 ⑥ 소독제에 따라 희석액 조제 및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3. 소독 시 주의사항

-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 * 고글을 착용하여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비누 손 세정→마스크 제거→비누 손 세정→새 마스크 착용→새 장갑 착용

4. 소독 후 주의사항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감염원이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름

☞ [붙임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2.23)

- * 재사용 가능한 고글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 후 재사용 가능
-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 직원이 실시한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III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

◆ 환자 이용 공간(구역)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 장비* 및 소독제 준비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 준수, 붙임 7 및 붙임 8)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4% 락스를 1:40 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25mL
 -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2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시설별 소독 장비 종류는 상이하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일회용이 아닌 경우 적절한 소독 시행 후 재사용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바닥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적으로 닦음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 (표면 소독) 준비된 소독제로 천(형걸 등)을 적신 후 손질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은 후 마르도록 둠

-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소독액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알코올(70%) 사용
- 스프레이로 표면 소독은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
- *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할 가능성이 있음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표면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기
- 압축 공기 사용은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 할 수 있어 금지
- (화장실 소독)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화장실 표면을 소독제로 닦음
- (세탁 소독)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온수세탁
 - 온수 세탁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
-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
 -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기 어려운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액에 30분 간 침적 소독
- (청소도구) 바닥 소독에 사용한 대걸레 헤드나 표면 소독에 사용한 천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는 것이 원칙
 - 폐기가 어려운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양동이는 소독제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10분 이상) 용액에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
 -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한 후에는 세척가능 장비는 소독하여 재사용하고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

-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리기

☞ [붙임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2.23)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청소 및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물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타올)으로 표면을 닦기
-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 (직원 사후 관리) 환자 이용 공간(구역) 청소·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 시설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환자의 거주 공간 소독 방법

- ①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을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온수로 철저히 세척
- ② 세부적인 소독 절차는 III. 환자 이용 공간(구역) 소독방법 및 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 소독하는 방법[붙임 4] 참조

☞ [붙임 6]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참조

1. 소독의 일반 원칙

- 소독제는 환경부 등의 허가를 득한 제품을 사용
 - * 소독제가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70% 알콜 사용
- 소독제 제품설명서 또는 제조사 권고사항* 준수
 - * 소독제 희석방법, 소독시간, 보관방법, 유효기간 등
- 환경 소독 전 방수용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소독 중, 소독 후)
-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 소독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 소독제에 따라 희석액 조제 및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 참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액* 희석배율

* 시판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제 원액의 유효염소 농도에 따른 희석 배율 및 염소 농도

| 유효염소농도 (ppm) | 차아염소산나트륨 농도(%) | 차아염소산나트륨·물 혼합 배율 | |
|-----------------|-------------------|-------------------|-------------------|
| | | 4% (40,000ppm) 원액 | 5% (50,000ppm) 원액 |
| 100 ppm | 0.01% | 1:400 | 1:500 |
| 500 ppm | 0.05% | 1:80 | 1:100 |
| 1,000 ppm | 0.1% | 1:40 | 1:50 |
| 5,000 ppm | 0.5% | 1:8 | 1:10 |

※ 환자 발생시 소독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소독지침(초판)」 참조

2. 소독 조치

가. 소독 명령

○ 법적 근거

- (법 제47조)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법 제49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을 명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시행 명령 통지(서식 1)

○ 지자체(보건소)에서 오염된 시설 또는 장소 등에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소독명령서 서식(서식 1)을 준용하여 소독을 한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

나. 소독이행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6호 소독방법」에 따라야 함

* 보건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다. 소독이행 여부 등 확인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 실시 전에 소독 실시 계획서 제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법률 제23호서식에 따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

○ 소독실시 확인 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자격 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소독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

그 영업을 관할하는 시·도(시군구)에 해당 사실 통보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 소독 완료 시 소독 결과 보고서 제출

*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서식 2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

- 보건소장은 소독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음

라.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은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임

서식 1

방역조치 관련 서식

**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소독 명령서**

| | | | | | | |
|---|---|-------|------|--------------|-----------------------------|---|
| 해당 시설 | 명칭 | | | | | |
| | 소재지 | | | | | |
|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명령의 내용 | 명령의 구분 | | | | | 이행기간 |
| | 일시적 폐쇄 | 출입금지 | 이동제한 | 의료기관 업무정지 | 소독 | |
| | | | | | | 2020. . . . 00:00 ~2020. . . . 00:00 |
| 명령대상 | 범위 | 시설 전체 | | | 시설 일부 (범위 한정 시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준수사항 | <p>환자 이용 공간(구역)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시는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사용금지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 | | | | |
|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제2호(의료기관 업무정지), 제5호(소독)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을 명합니다.</p> | | | | | | |
| <p>년 월 일</p> | | | | | | |
| <p>○○○ 보건소장 (관인생략)</p> | | | | | | |
| <p>유의사항</p> | | | | | | |
|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의료기관 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 | | | | | |

서식 2

소독 증명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 |
|--|--|---------------|
| 제 호 <h2 style="margin: 0;">소 독 증 명 서</h2> | | |
| 대상 시설 | 상호(명칭) 실시 면적(용적) ㎡ (㎡) | |
| | 소재지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관리(운영)자 확인</td> <td style="width: 70%;"> 직위 성명 (인) </td> </tr> </table> | 관리(운영)자 확인 |
| 관리(운영)자 확인 | 직위 성명 (인) | |
| 소독기간 | ~ | |
| 소독 내용 | 종류 | |
| | 약품 사용 내용 | |
| <p style="text-align: center;">「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인) </p>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 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 생물학적 방법

-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붙임 2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 ※ 사용 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시는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사용금지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 구분 | 소독시기 | 사용 재개 기준 | 비고 |
|-------------------------|---|--|--|
| 집단시설·다중시설 환자 이용 공간 (구역) |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이용 확인시 |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재개 단,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고농도 희석을 사용하므로 소독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후 사용재개 권고 | *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하루 사용 제한 권고 |
| 의료기관 (병원) |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로 오염된 환경 표면은 즉시 시행 · 환자가 재실하고 있는 격리실 주변 환경은 적어도 매일 시행하며 손의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자주 시행 · 환자 퇴실 후 시행 |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 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재개 권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관리 (병원급 의료기관용)」 안내('20.2.11.) |
| 의료기관 (의원급)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다녀간 후 환경관리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관리 (의원급 의료기관용)」 안내('20.2.11.) |
| 의료기관 (응급실) |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시 |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조건에서 4시간 이상 환기 이후 진료재개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20.2.20.) |

붙임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손위생 방법(WHO, 2008)

□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 | |
|---|---|
|  | <p>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p> |
|  | <p>2. 가운을 입는다.</p> |
|  | <p>3. 보건용 마스크(KF94, KF99, N95 등)를 착용한다.</p> |
|  | <p>4.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p> |
|  | <p>5.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p> |
|  | <p>6.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p> |
|  | <p>7.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p> |

□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

| | |
|---|--|
|  | <p>1.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p> |
|  | <p>2. 장갑만 벗기는 경우,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p> |
|  | <p>3. 손 위생을 시행한다.</p> |
|  |  |
|  | <p>5. 마스크 전면부를 만지지 말고 뒤쪽의 끈 부분을 잡아 마스크를 제거한다.</p> |
|  | <p>6. 손 위생을 시행한다.</p> |

* 장갑을 2중으로 낀 경우 장갑을 벗고, 가운의 끈 등을 조절하여 가운을 벗고, 최종적으로 장갑을 벗기

□ 손 위생(hand hygiene) 방법

- ① 청소 및 환경 소독 후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콜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비누를 이용한 경우 30초 이상 손 씻기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 제조업체의 지침 준수(붙임 7, 8),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세탁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붙임 6).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환경부, '20.2.23)

①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수거·처리

【 발생 및 보관 】

-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붙임2 참조)

※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

- 확진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

※ 병원 전체가 격리(코호트격리)되어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독 후 일괄 소각 처리(지자체 공공소각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소독하고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여 재사용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독 안내 지침(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 5쪽>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화학 물질을 선택
- 의사환자가 감염이 없다고 판단 될 때(검사결과 음성)까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또는 쿠션 등(세탁할 수 없는 직물)은 사용금지
 - 검사결과 양성이면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하거나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 (보관)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병원 내 보관 최소화

- 병원내 보관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반드시 보관하고, 부패위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

-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

【 수집·운반 】

-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
-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 이하 유지, 적재함 사용시 마다 **약물소독**

【 소각처리 】

- 해당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 투입
※ 처리 상황과 최종 처분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

| 구분 | 배출자 보관 | 운 반 | 처 리 |
|---------------|---|---|--|
|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조직물류 냉장 보관) |
|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당일 위탁처리</u> (1~2일 이내 보관) ○ <u>냉장보관 원칙</u> ○ 전용용기 <u>투입전·후 소독</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u> ○ 사용시 마다 <u>차량약물 소독</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당일 소각처리</u> |

※ 단, 특별자치도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4일 이내)하되 신속 운반·처리(2일 이내)

②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자가격리자에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을 무상지급

- 유역·지방환경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 확진 이후 병실 부족 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합성수지 전용용기 추가 제공

○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및 배출요령에 관한 매뉴얼* 보급(붙임3)

* 소독방법, 폐기물 투입 및 보관·처리방법, 확정판정 시 협조요청 사항 등

○ 발생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처리

① 증상 미발생 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 (배출)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

※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

- (수거·처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

②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 (수거·처리)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 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 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 소각처리

③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병원 이송 시까지 보관

- (수거·처리) 병원 이송 시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 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③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참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월)

- 소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진복,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환경부, '20.2.23)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기 권장 드립니다.
- 전용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체적의 75%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 별도의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시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의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용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봉투를 대신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담고,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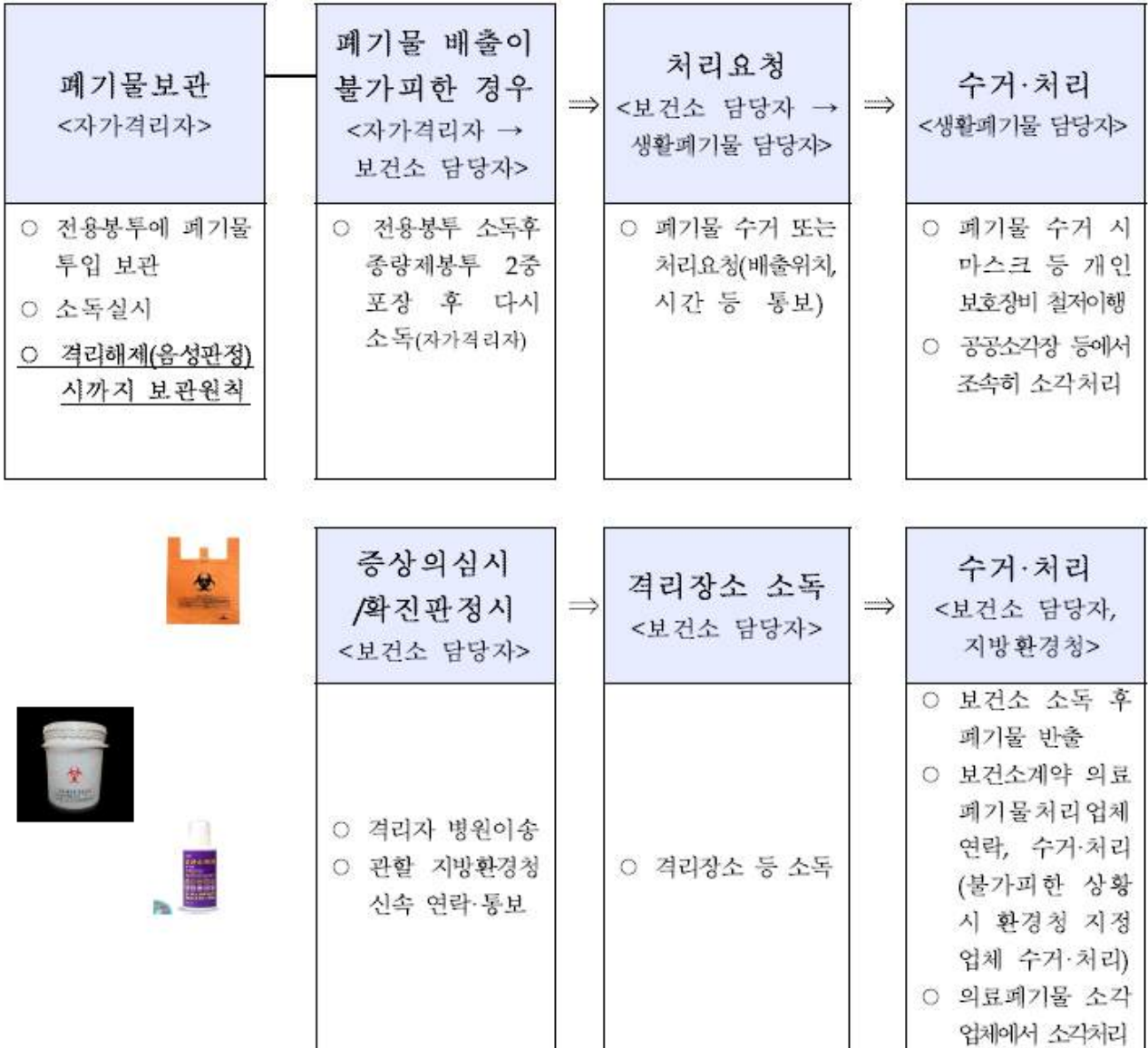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시고, 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③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된 경우 폐기물 배출요령

- ①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은 후 병원 이송 전까지 제공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투입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 후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



붙임 7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한 환경부 승인제품(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1. | 2719-0002 | 케비사이드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여 수건으로 표면을 닦는다. 2) 물체 표면에 본품을 직접 분사 후 2~3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예비세척 30초)한 후 수건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 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2. | 2719-0003 | 케비와입스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Dispen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한 장 씩 뽑아 사용한다. · 사용 후 덮개 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B. Pac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packet 을 열어 본 품을 꺼낸 후 펼쳐서 사용한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 등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3. | 2719-0018 | 릴라이온버큰마 이크로 (옥손)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대상</td> <td style="width: 50%;">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td> <td>100배 희석 (이 약 5g에 물을 넣어 500mL로 한다.)</td> </tr> </table> 나. 사용방법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100배 희석 (이 약 5g에 물을 넣어 500mL로 한다.)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100배 희석 (이 약 5g에 물을 넣어 500mL로 한다.)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한다. 2) 물체표면에 본품을 직접 골고루 분무한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그대로 건조 시킨다. 또는 본품의 희석용액을 종이타올이 들어있는 용기에 부어 종이타올을 충분히 적신다. 소독대상 물체 표면을 본품의 희석용액으로 충분히 적신 종이타올로 닦아낸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전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의 희석용액은 7일간 효과가 지속된다. 5) 본품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4. | 2719-0021 | 인바이로트루액 (클로록실레놀)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한다. 2) 물체 표면에 본 품을 직접 골고루 분무한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거나 그대로 건조시킨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 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5. | 2719-0025 | 엠펙스타 (80% 염화-n-알킬디 메틸벤질암모늄 염화디알킬디메 틸암모늄(2:3)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사용방법</th> <th>희석방법</th> </tr> </thead> <tbody> <tr> <td>표면 분무</td> <td>100배 희석 (9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td> </tr> </tbody> </table>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표면 분무 | 100배 희석 (9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 | | | | | |
| 표면 분무 | 100배 희석 (9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6. | 2719-0026 | 디-125 (80% 염화-n-알킬디 메틸에틸벤질암 모늄·염화알킬 벤질디메틸암모 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td> <td>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r> </table> <p>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 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 | | | | |
| 7. | 2719-0027 | 릴라이온버론 (옥손)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td> <td>100배 희석(이 약 10g에 물을 넣어 1L로 한다.)</td> </tr> </table> <p>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한다. 2) 물체 표면에 본 품을 직접 끌고루 분무한 후 10분 정도 접촉 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거 나 그대로 건조시킨다. 3)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오염물을 제거한 후 본품으로 소독한다. 4) 본품의 희석용액은 7일간 효과가 지속된다. 5) 본품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등 멸균 또는 고/ 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100배 희석(이 약 10g에 물을 넣어 1L로 한다.)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100배 희석(이 약 10g에 물을 넣어 1L로 한다.) | | | | | | | |
| 8. | 2719-0030 | 다이렉트이스타 (80% 염화-n-알킬디 메틸벤질암모늄· 염화디알킬디메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본 제품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본 제품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틸암모늄(2:3)액 | 참고) |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
| 9. | 2719-0031 | 디아에스 (80%염화-n-알 킬디메틸에틸벤 질암모늄?염화알 킬벤질디메틸암 모늄(1:1)혼합물) (수출용)(수출명: DR-Solution)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소독 (유효균주: 용범용량 참고) | <p>1.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p> <p>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적용대상</th> <th>희석비율 및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병원, 의료시설, 시험연구소 등 오염원 노출 및 전염병발생취약지의 살균소독 및 악취제거</td> <td>100배(1v/v%, 본제품 1리터를 물 99리터에 넣어 혼합)</td> </tr> <tr> <td>학교, 보육시설, 호텔, 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살균소독 및 위생세정</td> <td>200배(0.5v/v%, 본제품 500밀리리터를 물 99.5리터에 넣어 혼합)</td> </tr> </tbody> </table> | 적용대상 | 희석비율 및 방법 | 병원, 의료시설, 시험연구소 등 오염원 노출 및 전염병발생취약지의 살균소독 및 악취제거 | 100배(1v/v%, 본제품 1리터를 물 99리터에 넣어 혼합) | 학교, 보육시설, 호텔, 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살균소독 및 위생세정 | 200배(0.5v/v%, 본제품 500밀리리터를 물 99.5리터에 넣어 혼합) |
| 적용대상 | 희석비율 및 방법 | | | | | | | | | |
| 병원, 의료시설, 시험연구소 등 오염원 노출 및 전염병발생취약지의 살균소독 및 악취제거 | 100배(1v/v%, 본제품 1리터를 물 99리터에 넣어 혼합) | | | | | | | | | |
| 학교, 보육시설, 호텔, 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살균소독 및 위생세정 | 200배(0.5v/v%, 본제품 500밀리리터를 물 99.5리터에 넣어 혼합) | | | | | | | | | |
| 10. | 2719-0032 | 멀티엠펜에스원 액(80% 염화-n-알킬디 메틸벤질암모늄· 염화디알킬디메 틸암모늄(2:3)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범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용방법</th> <th>희석방법</th> </tr> </thead> <tbody> <tr> <td>표면분무</td> <td>100배 희석(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td> </tr> </tbody>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표면분무 | 100배 희석(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 | | | | | | | |
| 표면분무 | 100배 희석(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 | | | | | | |
| 11. | 2719-0033 | 엠펜-125 | 단단한 물체표면의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사용방법</p>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p>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p> <p>나. 사용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12. | 2719-0043 | 닥터큐007살균 소독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p>가. 대상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p> <p>나. 사용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13. | 2719-0047 | 퀵트플러스알파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p>가. 적용비율</p> <table border="1" data-bbox="792 1155 2038 1267"> <thead> <tr> <th>대상</th> <th>희석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td> <td>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r> </tbody> </table> <p>나. 사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4. | 2719-0048 | 비티크린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5. | 2719-0051 | 닥터크린맥스액제 (80% 염화-n-알킬디 메틸에틸벤질암 모늄·염화알킬 벤질디메틸암모 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16. | 2719-0052 | 박테사이드플 리스액제 (80% 염화-n-알킬디 메틸에틸벤질암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모늄·염화알킬 벤질디메틸암모 늄(1:1)액 | 참고) | <p>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p> <p>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17. | 2719-0053 | 로알크린플러스 액제 (80% 염화-n-알킬디 메틸에틸벤질암 모늄·염화알킬 벤질디메틸암모 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td> <td>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r> </table> <p>나.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p> <p>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 | | | | |
| 18. | 2719-0054 | 닥터크린액제 (80% 염화-n-알킬디 메틸에틸벤질암 모늄·염화알킬 벤질디메틸암모 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td> <td>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r> </table> <p>나.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p> <p>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p>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19. | 2719-0055 | 클린센스액 (80%염화-n-알 킬디메틸에틸벤 질암모늄·염화알 킬벤질디메틸암 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td> <td>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r> </table> <p>나.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p> <p>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 | | | | |
| 20. | 2719-0056 | 클리닉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사용방법 가. 대상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p> <p>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21. | 2719-0057 | 크린앤크리너 (80%염화-n-알 킬디메틸에틸벤 질암모늄·염화알 킬벤질디메틸암 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td> <td>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r> </table> <p>나. 사용방법</p>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2. | 2719-0058 | 크린엔올킬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범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상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3. | 2719-0063 | 클린브이3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용범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희석방법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4. | 2719-0064 | 메딕브이3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용법용량 참고) | <p>나.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다.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라.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25. | 2719-0065 | 피크린마스터액 (80% 염화-n-알킬디 메틸에틸벤질암 모늄·염화알킬 벤질디메틸암모 늄(1:1)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희석방법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26. | 2719-0073 | 에이크린액 (80%염화-n-알 킬디메틸에틸벤 질암모늄·염화알 킬벤질디메틸암 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희석방법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27. | 2719-0076 | 세니페이스65 (80% 염화-n-알킬디 메틸에틸벤질암 모늄·염화알킬벤 질디메틸암모늄(|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대상</th> <th style="width: 50%;">희석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td> <td>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r> </tbody> </table>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1:1)액) | | <p>나. 사용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28. | 2719-0077 | 제로100솔루션 (80% 염화-n-알킬디 메틸에틸벤질암 모늄·염화알킬벤 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p>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p> <p>나. 사용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29. | 2719-0078 | 메디카바살균소 독액 (80%염화-n-알 킬디메틸에틸벤 질암모늄·염화알 킬벤질디메틸암 모늄(1:1)액)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대상</th> <th style="width: 50%;">희석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td> <td>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r> </tbody> </table> <p>가. 적용비율</p> <p>나. 사용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30. | 2719-0080 | 매디솔루션액 (80%염화-n-알 킬디메틸에틸벤 질암모늄·염화알 킬벤질디메틸암 모늄(1:1)액 혼합물) |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나.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다.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라.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31. | 2719-0081 | 매디클리어 (80%염화-n-알 킬디메틸에틸벤 질암모늄·염화알 킬벤질디메틸암 모늄(1:1)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희석방법 : 65 배 희석(본 제품 1리터(1.04 kg)를 물 64리터에 넣어 잘 혼합)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32. | 2719-0082 | 옥시빌티비액 (과산화수소수(5 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대상</td> <td style="width: 50%;">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세정 및 위생소독</td> <td>원액사용</td> </tr> </table> 3.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대상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원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원액에 1~10분정도 접촉 후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그대로 말린다. 필요시 음용수로 닦아낸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세정 및 위생소독 | 원액사용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세정 및 위생소독 | 원액사용 | | | | | | | |
| 33. | 2719-0083 | 옥시빌티비와 입스 (과산화수소수(5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 1.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대상 물체 표면에 한 장씩 뽑아 사용한다. 사용 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0%)) |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2) 1~10분정도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자연건조 또는 필요시 음용수로 닦아낸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 | | | | | |
| 34 | 2720-0001 | 빅스존크린케어 액(80% 염화-n-알킬 디메틸에틸벤질 암모늄·염화알 킬벤질디메틸암 모늄(1:1)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가. 대상: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소독 및 위생소독, 소취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이 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이 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이 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 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
| 35.* | 2719-0001 | 1.닥터솔루션살 균소독액 2.퀵트플러스액 | 위생소독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대상</td> <td style="width: 50%;">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0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r> </table> 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증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200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200 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 | | | | | | | | |
| 36.* | 2719-0006 | 비티씨에이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유효균주 : 용법용량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3%;">대상</td> <td style="width: 33%;">희석방법</td> <td style="width: 33%;">적용비율</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td> <td>200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d>20 ml/m²</td> </tr> </table>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 대상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 200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 20 ml/m ² |
| 대상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 200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1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 20 ml/m ² |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참고) |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 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35, 36번 제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로 승인받은 34개 제품과 유효성분과 그 함량이 동일한 승인받은 소독제임

붙임 8

WHO 등에서 제시한 소독제 (환경부 승인제품)(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환경소독제 사용 가능 유효 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콜(70%), 제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1 | 2619-0001 | 77방역 소독에탄올액 (에탄올) | | <p>인체에 사용하지 말 것.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사용방법</p> <p>(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에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 하거나, 소독액을 수건 등에 적셔서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p>나.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사용방법</td> <td>희석방법</td> <td>적용비율</td> </tr> <tr> <td>표면분무</td> <td>원액</td> <td>25 ml / m²</td> </tr> </table> <p>다. 분무방법</p> <p>(1) 대상물에 25 ml / 제곱미터 용량으로 분무한다. (2) 화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분무한다. (3) 공간에 다량 분무하거나 화제,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용 분무기를 사용한다.</p>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표면분무 | 원액 | 25 ml / m ² |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 | | | | | | |
| 표면분무 | 원액 | 25 ml / m ² | | | | | | | | |
| 2 | 2619-0002 | 디에이크린 (에탄올)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p>인체에 사용하지 말 것.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 가. 사용방법</p> <p>(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에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 하거나, 소독액을 수건 등에 적셔서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 | <p>나.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사용방법</td> <td>희석방법</td> <td>적용비율</td> </tr> <tr> <td>표면분무</td> <td>원액</td> <td>25 ml / m²</td> </tr> </table> <p>다. 분무방법 (1) 대상물에 25 ml / 제곱미터 용량으로 분무한다. (2) 화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분무한다. (3) 공간에 다량 분무하거나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용 분무기를 사용한다.</p>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표면분무 | 원액 | 25 ml / m ² |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 | | | | | | |
| 표면분무 | 원액 | 25 ml / m ² | | | | | | | | |
| 3 | 2619-0003 | 오에스파워액 (에탄올)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용법용량 참고) | <p>인체에 사용하지 말 것. 희석방법, 적용비율, 분무방법</p> <p>가. 사용방법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에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 하거나, 소독액을 수건 등 에 적셔서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 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p>나.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사용방법</td> <td>희석방법</td> <td>적용비율</td> </tr> <tr> <td>표면분무</td> <td>원액</td> <td>25 ml / m²</td> </tr> </table> <p>다. 분무방법 (1) 대상물에 25 ml / 제곱미터 용량으로 분무한다. (2) 화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분무한다. (3) 공간에 다량 분무하거나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용 분무기를 사용한다.</p>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표면분무 | 원액 | 25 ml / m ² |
| 사용방법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 | | | | | | |
| 표면분무 | 원액 | 25 ml / m ² | | | | | | | | |
| 4 | 2719-0004 | 성인135백타액 (벤잘코늄염화 물농축액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150배 희석 (14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 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p>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150배 희석 (14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150배 희석 (14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5 | 2719-0005 | 천왕유제 (염화벤잘코늄)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 | | | | |
| 6 | 2719-0008 | 로알크린살균 소독액 (염화벤잘코늄)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 | | | | |
| 7 | 2719-0009 | 하이프렐바에 스에프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 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0배 희석 (1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1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1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 |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
| 8 | 2719-0011 | 바이제로 (Bizero)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 상</td> <td>희석방법</td> <td>적용비율</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td> <td>300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299리터에 넣어 잘 혼합)</td> <td>50ml/m²</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 낸다 3)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 상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300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2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 50ml/m ² |
| 대 상 | 희석방법 | 적용비율 |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300배 희석(본 제품 1리터를 물 299리터에 넣어 잘 혼합) | 50ml/m ² | | | | | | | | |
| 9 | 2719-0012 | 오송크린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배 희석 | |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배 희석 | | | | | | | | | |
| 10 | 2719-0013 | 피크린 (벤잘코늄염화 물)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배 희석</td> </tr> </table>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배 희석 | |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배 희석 | |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11 | 2719-0016 | 닥터큐살균소독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p> <p>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12 | 2719-0017 | 디스텔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대상</td> <td style="width: 50%;">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0배 희석(1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1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199 L의 물에 본 품 1 L를 넣어 잘 혼합사용) | | | | | | | |
| 13 | 2719-0019 | 비라클린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대상</td> <td style="width: 50%;">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원액사용</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원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원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원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원액사용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원액사용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14 | 2719-0020 | 페스트캡비씨유제(벤잘코늄염화물)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 | | | | |
| 15 | 2719-0022 | 메디크로스살균소독액(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16 | 2719-0023 | 이디와입스(염화벤잘코늄액(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17 | 2719-0028 | 서우하이진액(벤잘코늄염화물농축액 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 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18 | 2719-0029 | 잡스그린퓨어액 (벤잘코늄염화 물농축액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0배 희석</td> </tr> </table>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 | | | | |
| 19 | 2719-0034 | 박테사이드유제 (벤잘코늄염화 물)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20 | 2719-0035 | 벤잘크린유제 (벤잘코늄염화 물)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21 | 2719-0036 | 잡스살균비티씨 액(80%염화-n- 알킬디메틸에틸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벤질암모늄·염 화알킬 벤질디메틸암모 늄(1:1)액 |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 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2 | 2719-0037 | 설파세이프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직접 분무하고 마른 천이나 종이티슈를 이용하여 표면을 문지른다. 최소 5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유지한다. (단, Aspergillus niger, Influenza virus H1N1, Mycobacterium tuberculosis, Feline Calicivirus는 15분 이상) 2)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멸균 또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3 | 2719-0040 | 애니오셀프 프리미엄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및 사용방법 가. 희석방법 1) 제품의 분주 (1) 포장단위 1L 제품의 분주 제품 용기의 가운데 부분을 누르면 용기 하단에서 상단으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제품 액이 흘러나가고, 용기 상단에 액이 고인다(최대용량 20mL). 용기 상단에 새겨진 눈금에 따라 액을 계량하고 이를 분주하여 희석한다. (2) 포장단위 5L 제품의 분주 제품 용기 상단의 수동식 펌프를 누르면 액이 20mL씩 분주된다. 이를 희석한다. 2) 희석방법 본 액을 냉수 또는 미온수에 적용하여 400배(0.25%)로 희석한다. (예) 냉수 또는 미온수 7980 mL에 본품 20 mL를 넣어 잘 혼합한다. 나. 사용방법 (1)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은 후, 최소 5분 이상 방치한다. (단, Aspergillus niger, Candida albicans는 15분 이상) (2)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멸균 또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24 | 2719-0041 | 에코하이진파워 액(벤잘코늄염 화물농축액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용비율 : 희석없이 바로 사용한다. 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본 제품은 희석없이 바로 사용한다. (2)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 또는 분무할 수 있는 용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고르게 분무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3) 필요한 경우 본 제품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4)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5)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25 | 2719-0044 | 보디가드알파액 (벤잘코늄염화물)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td> <td>20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단단한 물체표면의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 200배 희석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 200배 희석 | | | | | | | |
| 26 | 2719-0045 | 크림마스타액 (벤잘코늄염화물)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td> <td>20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4) 본 제품은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 200배 희석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 200배 희석 | | | | | | | |
| 27 | 2719-0049 | 이지스액 (벤잘코늄염화물농축액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2. 희석방법, 사용방법 가.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0 배 희석</td> </tr> </table> <p>나. 사용방법 (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p> | 대상 | 희석방법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200 배 희석 |
| 대상 | 희석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세정 및 위생소독 | 200 배 희석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 <p>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중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28 | 2719-0050 | 바로클린액 (벤잘코늄염화 물농축액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p> <p>2. 적용비율 : 희석 없이 바로 사용한다.</p>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본 제품은 희석 없이 바로 사용한다.</p> <p>(2)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 또는 분무할 수 있는 용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고르게 분무하거나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3) 필요한 경우 본 제품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4)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p> <p>(5)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중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29 | 2719-0059 | 바이탈오투스 균소독제 (이산화염소수) (수출용)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td> <td>원액 사용</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원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원액을 수건 등에 적서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원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 원액 사용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 원액 사용 | | | | | | | |
| 30 | 2719-0060 | 엔지셉트플러 스와입스 (벤잘코늄염화 물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단단한 물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한 장씩 뽑아 사용한다. 사용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p> <p>(2) 필요한 경우 사용 후 10분 이상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에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 품으로 소독한다.</p> <p>(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중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31 | 2719-0061 | 클리넬유니버 설와입스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단한 물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한 장씩 뽑아 사용한다. 사용 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사용 후 10분 이상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에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 품으로 소독한다.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32 | 2719-0062 | 사라사이드 (벤잘코늄염화 물농축액 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td> <td>원액사용</td> </tr> </table>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원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원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 필요한 경우 원액에 최소 1~5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 원액사용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 원액사용 | | | | | | | |
| 33 | 2719-0066 | 사라사이드와입 스(벤잘코늄염 화물농축액 50)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대상 물체 표면에 한 장씩 뽑아 사용한다. 사용 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1 ~ 5분 이상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로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34 | 2719-0068 | 페라싸이드액 (과초산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적용비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able> | 대상 | 희석 방법 | |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 용법용량 참고) | <table border="1">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10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100배 희석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100배 희석 | | | | | | | |
| 35 | 2719-0069 | 페라플루액 (과초산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10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100배 희석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100배 희석 | | | | | | | |
| 36 | 2719-0070 | 에이치아이엠스 파액 (과아세트산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적용비율</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10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100배 희석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100배 희석 | | | | | | | |
| 37 | 2719-0071 | 세니페이스200 (벤잘코늄염화)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적용비율</p>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
| | | 물액(50%) |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희석 방법</td> </tr> <tr> <td>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td> <td>200배 희석</td> </tr> </table>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희석액을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하거나 희석액을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필요한 경우 희석액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 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대상 | 희석 방법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대상 | 희석 방법 | | | | | | | |
| 단단한 물체의 표면 세정 및 위생소독 | 200배 희석 | | | | | | | |
| 38 | 2719-0074 | 다자바닥터 (80%염화-n-알 킬디메틸에틸벤 질암모늄·염화 알킬벤질디메틸 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소독대상 물체 표면에 한 장씩 뿜아 사용한다. 사용 후 덮개부분을 닫아 내용물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p> <p>(2) 필요한 경우 1 ~ 5분 이상 표면과 약액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한 후 깨끗한 마른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 전에 흐르는 물로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본품으로 소독한다.</p> <p>(4)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39 | 2719-0075 | 보디가드에프 (80%염화-n-알 킬디메틸에틸벤 질암모늄·염화 알킬벤질디메틸 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p> <p>(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40 | 2719-0079 | 케어크로스살 균소독액 (80%염화-n-알 킬디메틸에틸벤 질암모늄·염화 알킬벤질디메틸 암모늄(1:1)액) | 단단한 물체 표면의 살균 및 소독 (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p> <p>2. 사용방법</p> <p>(1)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분무 살포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2) 소독 처리 후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한 후 수건으로 닦거나 그대로 말린다.</p> <p>(3) 현저한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소독한다.</p> <p>(4) 본 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기구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 | | |
| 41 | 2719-0084 | 에코하이진 | 단단한 물체 |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 | | | | |

| 번호 | 승인 번호 | 제품명 | 사용 용도 | 사용량·사용방법 및 취급상 주의사항 |
|----|----------|-------------------------------|-----------------------------------|--|
| | | 후 레 쉬 액 (벤잘코늄염화 물농축액50) | 표면의 살균 및 소독(유효균주 : 용법용량 참고) | <p>2. 적용비율 : 희석 없이 바로 사용한다.</p> <p>3.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p> <p>(1) 본 제품은 희석 없이 바로 사용한다.</p> <p>(2) 소독 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기 또는 분무할 수 있는 용기를 이용하여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고르게 분무하거나 수건 등에 적셔 표면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닦는다.</p> <p>(3) 필요한 경우 본 제품에 최소 10분 이상 침적 또는 접촉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닦아낸다.</p> <p>(4)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제거한 후에 사용한다.</p> <p>(5) 본 제품은 위생소독 또는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수술대, 환자의 배설물 등 멸균 또는 고/중등도의 소독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물품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용기 등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p> |

붙임 9

자주 묻는 질문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생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 하여 전염이 됩니다.
- WHO는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밝혀진 근거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말과 이를 접촉했을 때 전파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COVID-19)

Q3. 코로나바이러스는 체외로 배출되면 얼마나 생존하나요?

-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나 MERS-CoV의 경우를 보면 체외로 배출된 상태에서 온도, 습도, 빛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환경 표면에서 수일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환자가 사용한 공간이나 물건 등은 소독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Q4. 소독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짜 사멸하나요?

- WHO, 미국CDC 등의 정보에 따르면,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 MERS-CoV 등 과거에 밝혀진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소독제 효능을 시험한 결과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가능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및 70% 알콜 등에서도 소독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다양한 국가의 환경부처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환경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SARS-CoV-2) 소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한 제품목록을 제시하였고(붙임 7), WHO 등에서 제시한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환경부 허가제품 제시하였으니(붙임 8)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중 소독제를 선택하여 사용시 반드시 제조회사별 사용방법, 효과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Q5. 손씻기의 효과와 손소독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권고합니다. 다만,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6. 집을 소독한 경우 집을 비워야 하나요?

- 환자가 거주한 집을 소독 시에는 소독기간에는 집을 비워야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면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Q7. 다중이용시설에 환자가 다녀간 경우 전체를 소독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소독방법을 선택합니다.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설정하여 소독계획을 마련합니다.
- 다중시설 내에서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공간(구역)의 경우 자체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Q8. 소독 후 반드시 하루 동안 사용하지 말아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의 소독시에는 소독기간에는 시설을 비워야 하고 다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 까지 하고 그 다음날 사용이 가능합니다.

Q9.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의 이용이 확인된 경우 이 지침에 근거하여 소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 일상적 소독은 자체 소독 기준에 따라 일상적인 소독을 시행합니다.

Q10. 소독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환경소독은 환경부와 WHO 등에서 제시한 성분의 소독제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붙임 7과 8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참고 문헌

1.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14). MOH Pandemic Readiness and Response Plan for Influenza and other Acute Respiratory Diseases
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during Health Care when Novel Coronavirus (nCoV) Infection is Suspected. WHO/2019-nCoV/IPC/v2020.1.25.
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How to Put On and Take Of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trieved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website: https://www.who.int/csr/resources/publications/PPE_EN_A1sl.pdf
4.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2008).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May 2019 updated)
5. Interim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Areas Exposed to Confirmed Case(s) of 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 in Non-Healthcare Commercial Premises(Revised on 05 February 2020) : <https://www.nea.gov.sg/our-services/public-cleanliness/environmental-cleaning-guidelines/guidelines/guidelines-for-environmental-cleaning-and-disinfection>(National Environment Agency singapore)